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안 (박해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809 발의연월일: 2024. 11. 22.

발 의 자: 박해철 • 추미애 • 송옥주

김주영 · 김윤덕 · 안태준

염태영 · 강선우 · 박홍배

전재수 · 서영교 · 한민수

진성준 • 윤건영 의원

(14위)

제안이유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온실가스 배출임. 이에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수립하면서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지 계획을 주요 사항으로 반영하였으나, 탈석탄 과정에서 예측되는 지역사회의 피해 대책과 근로자의 실업이나 전직 등에 대한 대책은 부재한 실정임.

특히 2021년 「석탄발전폐지·감축을 위한 정책방향」을 통해 발전 사업자 권리, 일자리와 지역경제 문제 최소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 하였으나, 대부분 실행되지 않고 있어 시급한 대책마련이 필요함.

이에 탄소중립을 위하여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직·간접적 피해와 지역경제 위기를 예방하고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석탄화력발전소 근로자의 고용안

정 및 지역주민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의 정의 로운 전환을 실현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이 법의 목적을 탄소중립을 위하여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직·간접적 피해와 지역경제 위기를 예방하고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석탄화력발전소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지역주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함(안 제1조).
- 나. 석탄화력발전소,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석탄화력발전소 근로자 지역활성화 산업을 정의함(안 제2조).
- 다. 이 법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지원 및 특례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함(안 제3조).
-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폐지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지원방안을 강구하도록 함(안 제4조).
- 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3년마다 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종합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5조).
- 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폐지지역에 대한 지역활성화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고,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 주민, 노사 당사들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함(안 제6조 및 제7조).
- 사.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영향조사

- 를 실시하여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계획을 지역개발계획에 반영하여야 함(안 제8조 및 제9조).
- 아. 정부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경제 진흥 등을 위하여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기금을 설치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해당 기금을 운용·관리하도록 함(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 자. 화력발전소 폐지지역에 대한 교부세 지원의 확대, 국고보조금 인 상지원,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시와 규제자유특구에 관한 특례 등을 규정함(안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 차.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의 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법률 제 호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탄소중립을 위하여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직·간접적 피해와 지역경제 위기를 예방하고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석탄화력발전소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지역주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석탄화력발전소"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 따른 발전사업사업자가 운영하는 시설로서 석탄을 연료로 하는 발전시설을 말한다.
- 2.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이란 「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폐지 계획이 반영된 설비가 위치한 시· 군·구와 석탁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라 경제적 피해가 예상되는 인 접 지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 3. "석탄화력발전소 근로자"란 석탄화력발전소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였던 근로자와 석탄화력발전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 다.
- 4. "지역활성화 산업"이란 석탄화력발전산업을 대체하여 석탄화력발

전소 폐지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산업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이하 "폐지지역"이라 한다)에 대한 지원 및 특례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폐지지역의 경제 진흥, 석탄화력발전소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 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지원 방안 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5조(종합지원계획의 수립)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폐지지역에 대한 지원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폐지지역 종합지원 계획(이하 "종합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하다.
 - ② 종합지원계획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대통령소속 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 및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립하되,「기후위기 대응을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다만,종합지원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종합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폐지지역의 인구·환경·산업 등 경제적 피해 규모 산정과 대책 에 관한 사항
- 2. 폐지 석탄발전소의 대체 에너지 및 대체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 3. 폐지지역의 고용ㆍ취업 현황 및 지원 대책에 관한 사항
- 4. 폐지지역의 국토 및 해양의 이용·개발·보전과 관광자원의 개발 및 농업·수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 5. 폐지지역의 교육·보건·의료·사회복지 및 생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 6. 폐지지역의 도로·항만·공항·수도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 ·정비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폐지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종합지원계획을 반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종합지원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종합지원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종합지원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

- 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① 그 밖에 종합지원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사업)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폐지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 석탄화력발전소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지역주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사업(이하 "지역활성화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 1. 제5조에 따른 종합지원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평가
 - 2.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창업의 촉진 및 창업자에 대한 지원
 - 3. 지역활성화 산업 전문인력의 수급분석 및 육성
 - 4. 지역활성화 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실용화
 - 5. 지역에 특화된 산업 및 서비스 등의 발굴ㆍ육성
 - 6. 그 밖에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 석탄화력 발전소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지역주민 복리 증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지역활성화 사업의 추진 절차·방법·재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주민 등 참여) ① 정부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 주민, 노사 당사자들의 참여를 보

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참여 방법ㆍ지원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환경보전계획의 수립 등) ①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환경을 보전하고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한 환경오염 등을 해소하기 위한 계획(이하 "환경보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지역개발계획(「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개발계획을 말한다)에 반영하여야하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시·도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한다. 환경보전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 ④ 그 밖에 환경보전계획의 수립과 공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 제9조(환경영향조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미리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변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환경영향조사를 실시

하고, 그 조사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1. 산림・식생(植生)・생태계・수자원 등 자연환경에 관한 사항
- 2.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한 환경오염에 관한 사항
- 3. 인구·산업·상하수도 등 사회화경에 관한 사항
- 4. 석탄화력발전소가 주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환경보전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조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 관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그 밖에 환경영향조사의 실시와 그 결과의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지원기금의 설치) ① 정부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지역 경제 활성화, 석탄화력발전소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지역주민 복리 증진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석탄화력발전 소 폐지지역 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② 기금은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1. 정부의 출연금
 - 2.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
 - 3.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 4. 기금 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 ③ 기금을 지출할 때 자금 부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다른 기금과 그 밖의 재원으로부터 차입을 할 수 있다.
- 제11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 1.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주민과 석탄화력발전소 근로자의 고 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 2. 지역활성화 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
 - 3. 지역활성화 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융자·투자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금융지원
 - 4. 지역활성화 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 홍보
 - 5. 차입금의 워리금 상환
 - 6. 기금의 조성 ·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 7. 그 밖에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 석탄화력 발전소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지역주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 제12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기금의 운용 ·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

재정법」 제74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기금운용심 의회를 둔다.

- ④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교부세 지원의 확대)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활성화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지방교부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세를 확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국고보조금의 인상지원) 지역활성화 사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한 국가의 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에 따른 차등보조율과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율에 따라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15조(예비타당성조사 실시에 관한 특례) 기획재정부장관은 석탄화력 발전소 폐지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 석탄화력발전소 근로자의 고용 안정 및 지역주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 제16조(규제자유특구에 관한 특례)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석탄화력 발전소 폐지지역을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 제특례법」 제75조에 따른 규제자유특구로 우선 지정하여야 한다.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 석탄화력발전소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지역주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건의에 따라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이 아닌 곳에 규제자유특구를 우선 지정할수 있다.

제17조(조세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 석탄화력발전소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지역주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세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소 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